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위헌성’ 탄핵 여부 가른다

尹 탄핵심판 선고 핵심 쟁점

국회·선관위 軍투입 등 5가지 사유
국무회의의 실제·정치인 체포 지시 주목
1개만 ‘중대한 위법’ 인정돼도 인용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을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다.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도 판단 대상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사유로 다뤄졌다.

재판관들은 소추사유 각각에 관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위법·위헌 여부를 따진다.

이후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학자나 헌법재판에 능통한 법조인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인용 의견을 선택하는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요건에 맞지 않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혹도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사유 5개 중 1개만 중대한 위헌·위

법으로 인정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현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 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일부 헌법학자들의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현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치적 문제를 빌미로 무모하게 군을 동원함으로써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의 지위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스스로가 국헌문란을 기도한 것”이라며 “그 해악과 위험성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경우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소수의 병력만 단시간 투입했고, 일부 위법 소지가 있었더라도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수용해 계엄을 해제했기 때문

에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를 택할 것이라는 견해다.

소추사유의 ‘입증 부족’도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되거나 반복돼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상당수의혹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머지 분명한 사실관계만으로는 파면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각하 의견을 선택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나, 국회 의결 없이 내란죄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해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ilbo.com

평결 통해 결론 도출... 최종 결정문 문구 조율

현재,尹 탄핵심판 선고 준비

재판관들,尹 파면 여부 큰 틀 합의
별개·보충의견 등 후속작업에 집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는 전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현재는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는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통상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결론 도출을 마친 만큼 현재는 선고까지 결정문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기재할지 여부에 관해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헌법연구관 TF는 변론 종결 이후 인용·기각·각하 등 다양한 경우를 놓고 결정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재판관들은 이 결정문 초안을 놓고 수정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이날에 이어 3일에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 당일에도 평의가 열릴 수 있는데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수순에서 열릴 수 있다.

현재가 결론을 내렸더라도 재판관 평결은 선고일 당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실무제도는 “평결 후 의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 평의의 속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당일 오전 평의를 열고 평결을 진행한 바 있다. 8인의 재판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선고일 공개된다. 현재 관계자는 “평의나 평결 관련된 내용은 모두 비공개 사안”이라고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대비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

경찰, 현재 주변 150m ‘진공상태화’ 완료

선고일 전국에 갑호비상 발령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싸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

m에서 150m로 확장해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선고일이 발표된 전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진공작전’이 25시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경찰버스 160여 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 차량

이 동원됐다. 시위자들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인도 통행은 허용된다. 주변 상가나 자택, 회사도 평소와 같이 드나들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문 앞 인도는 현재 관계자와 취재진 등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된다. 경찰은 선고일 전국에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과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최대한 동원한다. 연합뉴스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